무배당 다이렉트 늘안심운전자보험1106 상품요약서

◎ 문답식 상품해설 Q&A

Q) 보험가입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Q)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Q)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A)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보험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1) 상품의 특이사항

① 예정이율 : 3.75%(연복리)

②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주기
10년	10년	월납, 연납

③ 만기환급금

- 1종: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2%
- 2종: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0%

2) 가입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① 가입대상 : 18세 ~ 65세(보험나이기준)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내역

(기준: 1종)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만기환급금	보험 만기시	보험가입금액 × 2%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선택계약	신주말[주1]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신주말 교통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신주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신주말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부, 상지 또는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500만원 한도로 보장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일반상해 골절화상진단수술	골절이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40%
		골절이나 화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일상생활 배상책임	약관에서 정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20만원)
	일상생활 강력범죄발생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음주,무면허제외)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피해자 1인당> 1. 피해자 사망시 : 3천만원 2. 피해자 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3. 피해자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4. 피해자 140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운전중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상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피해자 1인당 3천만원한도
	운전중사고 벌금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되었을 경우(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약관상의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부상등급별 : 5만원 ~ 500만원

주1)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주2)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

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이 상품의 「운전중사고벌금」,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 예정이율

이 상품의 예정이율은 연복리 3.75%입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3) 예정위험율

예정위험율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을 예정위험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예정위험율 예시>

(기본계약, 자가용운전자기준)

담 보 위 험		예정위험율	
		남자	여자
교통상해	사망위험률	0.000331	0.000164
	80%이상후유장해발생율	0.000043	0.000020
	80%미만후유장해지급율	0.000118	0.000070

4) 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을 말한다.

4. 보험료 지수 및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1) 보험료지수

보험료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순보험료(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위험률 및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대비 높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보험료지수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10년납, 1종)

구 분		보험료지수(%)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만원)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30.2	10년 (10년)	1,000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약		129.5		1,000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특약		131.6		7
일반상해골절화상진단수술 특약		129.0		10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26.6		10,000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특약		150.0		100
교통상해입원일당 특약		129.5		1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128.7		3,000
운전중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129.3		3,000
운전중사고벌금 특약		127.7		2,000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약		135.1		200
자동차사고성형수술 특약		129.0		100
자동차사고부상 특약		128.4		500

2) 연간보험료

연간보험료란?

1년동안 위험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영업보험료를 "연간보험료"라고 합니다. 연간보험료는 회사간 보장위험별 보험료 수준 비교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납입보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간보험료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10년납, 1종)

구분	담보명	보장위험명	연간보험료 (원)	기준보험금 (만원)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사망	4,433	1,000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576	1,000
		교통상해80%미만후유장해	1,580	1,000
선택계약	신주말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특약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3,120	1,000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특약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1,248	7
	일반상해골절화상진단수술 특약	골절진단	1,624	10
		골절수술	637	10
		화상진단	217	10
		화상수술	18	10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	1,248	10,000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특약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374	100
	교통상해입원일당 특약	교통상해입원일당	9,485	1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21,840	3,000
	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14,102	3,000
	운전중사고벌금 특약	운전중사고벌금	2,995	2,000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약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624	200
	자동차사고성형수술 특약	자동차사고성형수술	499	100
	자동차사고부상 특약	자동차사고부상	20,966	500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지환급금

○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10년납, 월납, 1종
○ 가입담보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7만, 일반상해골절화상진단수술 50만,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100만, 교통상해입원일당 2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운전중사고벌금 2,000만,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300만, 자동차사고성형수술 100만, 자동차사고부상 500만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44,920	1,350	0.6
3년	734,760	206,850	28.2
5년	1,224,600	426,100	34.8
7년	1,714,440	660,150	38.5
10년	2,449,200	1,000,000	40.8

3)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